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8
----------	------

제출연월일: 2021. 6. 30.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성실·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전산 추첨 방법 삭제(안 제4조제1항제1호)

다. 지원방법 확대

-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안 제5조제1항제4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1748호, 2021. 6. 2.)

라. 입법예고: 2021. 5. 24. ~ 6. 14.(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선정기준일(해마다 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로, “법인·개인을 말한다”를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정기준일 현재”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를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 및”으로, “법인·개인을”을 “자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진”을 “두고 있는”으로, “법인 또는 개인”을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인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모범납세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개인은 제외할 수 있다”를 “울산광역시 유공·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을 “성실납세자:”로,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천한다.”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을 “모

범납세자:”로, “등을 참작한다.”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선정결과 및”을 “지원대상자에게 선정결과,”로, “알려야”를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1호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를 “표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예우”를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탈세·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20 . . . ~ 20 . . .

위 차량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차량입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중구</u></p> <p><u>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u></p> <p><u>조례</u></p>	<p><u>울산광역시 중구</u></p> <p><u>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성실납세자”란 <u>선정기준일</u> (해마다 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u>현재</u> 최근 3년간 구세 (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u>법인·개인을 말한다</u>.</p> <p>3. “모범납세자”란 <u>선정기준일</u> <u>현재</u>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u>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가 없는 법인·개인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 및 대상)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매년 1월 1일</u> <u>기준으로</u> ----- ----- ----- ----- <u>자를 말한다</u>.</p> <p>3. ----- <u>매년 1월 1일</u> <u>기준으로</u> ----- ----- ----- <u>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 및</u> ----- <u>자를</u> -----.</p> <p>제3조(지원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후단 신설>

- 1. (생략)
- 2. 모범납세자(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개인은 제외할 수 있다.

- 1.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한다.
- 2.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당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두고 있는 -----

자-----.

이 경우 법인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모범납세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울산광역시 유공·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 1. 성실납세자: -----
----- 등
- 2. 모범납세자: -----
----- 등

② -----
--- 지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

<신 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 2. 3. (생략)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모범 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야 ----.

③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

-----.

- 1. 표창
- 2. 3. (현행과 같음)
- 4.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 5. -----
-----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탈세·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삭 제>

<참고자료>

[별지 제1호서식]

【현행】



【개정안】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연간 비용 추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비고
계	1,840천원	구비
성실·모범납세자 표창패	20명×83천원×1회 = 1,660천원	
성실·모범납세자증 (스티커)	20명×9천원×1회 = 180천원	

-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3. 작성자

- 소 속: 세무1과
- 직 급: 지방세무주사
- 성 명: 안순연
- 연락처: (052)290-3352